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90 발의연월일: 2025. 5. 7.

발 의 자:정진욱・이개호・조인철

이언주 • 박지원 • 신정훈

문금주 · 오기형 · 박균택

전진숙 · 양부남 · 김용민

안도걸・김 윤・김주영

최민희 • 윤준병 • 강경숙

김준형 • 허성무 • 신장식

노종면 · 서미화 · 오세희

이훈기 • 박용갑 • 정일영

채혂일 • 박해철 • 장종태

김윤덕 · 김문수 · 송재봉

이재관 의원(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실심의 절차에서 기본권적 고려가 결여되었거나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해석 또는 적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권력을 헌법에 따라 행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가 사실상 차단된 경우에까지 헌법재판의 문을 닫아두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됨.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 (안 제68조제1항 개정).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제68조(청구 사유) ①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	
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u>법원의 재판을</u>	<u>헌</u> 법재판소에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